

case

7

식료품용 저울

요약

사례명	식료품용 저울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1705 (2020.05.27.)
사실관계	대만, 스위스, 중국, 독일에서 생산된 159개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네 가지 주요 어셈블리(작업 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고객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프린터 어셈블리, 베이스 유닛)를 만들고 이를 최종 조립하여 식료품용 저울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메인 PCBA 및 기타 계량용 구성요소(예: 계량 플래터, 로드셀 등)를 포함하는 베이스 유닛이 식료품용 저울에 본질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베이스 유닛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재료가 중국산이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이러한 중국산 부품을 단순히 조립한 것에 해당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p>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⁵⁾

사례명 [식료품용 저울]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1705 (2020.05.27.)

사실관계

요청자 Mettler-Toledo, LLC (대리인: Sidley Austin LLP)

제품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료품용 저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 스위스, 중국 및 독일에서 생산된 159개의 부품(대부분 중국산)으로 제조되며, 아래와 같은 주요 서브 어셈블리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 고객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 프린터 어셈블리 - 베이스 유닛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료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중량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고객에서 표시하는 기능 및 가격 라벨을 인쇄하는 기능 수행)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작업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대만 LCD 터치스크린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개별 구성요소 (보조 PCBA, 케이블, 내·외부 커버, 어댑터, 실링 링, 타이 및 나사 등 모두 중국산)를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15단계로 구성)

2. 고객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대만 LCD 스크린을 포함한 총 28개의 개별 구성요소를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14단계로 구성되며, 작업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제조 공정과 유사)

5)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3. 프린터 어셈블리: 50개의 중국산 개별 구성요소를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60단계로 구성)
 - 프린터 헤드, 커버 패널, 용지 재활용 모듈, 하단 모듈의 네 가지 서브 어셈블리 제조
 - 네 가지 서브 어셈블리를 결합하여 프린터 어셈블리를 제조한 후, 프린트 기능 확인을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한 테스트 수행
4. 베이스 유닛: 메인 PCBA와 2개의 보조 PCBA, 파워 컴포넌트, 계량 플레이터와 로드셀(load cell)을 포함하여 73개의 계량용 구성요소가 포함되며(대부분 중국산), 이 구성요소들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16단계 55개의 공정으로 구성)
5. 최종 조립: 각각의 어셈블리를 결합하여 최종 제품 완성
6. 최종 테스트: 멕시코에서 미국산 및 독일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기능테스트 수행
7.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된 구성 요소, 제조 공정 등 모든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 조립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판정 결과

- ▣ CBP는 메인 PCBA 및 기타 계량용 구성요소(예: 계량 플레이터, 로드셀 등)를 포함하는 베이스 유닛이 식료품용 저울에 본질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베이스 유닛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재료가 중국산이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이러한 중국산 부품을 단순히 조립한 것에 해당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결론

- ✓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 결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본 사안에서 제시된 저울의 경우, 4가지의 서브 어셈블리를 통해 계량, 라벨 인쇄, 디스플레이 표시 등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나, CBP는 저울의 핵심이 계량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베이스 유닛의 원산지를 최종 제품의 원산지로 판정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1705 (2020.05.27), <https://rulings.cbp.gov/ruling/N311705>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ed=on